♥ 풍수해 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

재난지원제도	구분	풍수해보험
국가 무상지원	지원 형태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형태
적법시설물에 한함	대상	적법시설물에 한함
일반(특별)재난지역에 해당	물건	지역 및 대형시설 가입제한 없음
전(반)파, 소파(지진 한정)	보상	전(반)파, 전반파, 소파, 지붕파손,
침수(주택)	범위	침수(주택), 동산, 손해방지비용
손실액의 30~35%	보상 금액	손실액의 70%, 80%, 90% 동산은 주택 보험가입금 내 10% (동산은 90% 보상형만 가입가능)
없음	개인	보험료의 0% ~ 30%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	부담	(풍수해,॥,॥ 및 일반,기초, 차상위 등 계층별 차등)
재난지원제도 를 점차적으로	기타	주택침수 不 담보, 자기부담금
축소하여 운영함	사항	(풍수해III) 등 보험료 절약 가능

ਂ 풍수해 재난 시 발생가능 피해들



재난발생시 정부의 지원금은 기본!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풍수해 보험이 필수입니다.



2006년 DB손해보험이 보험사 중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와 개발한 상품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태풍, 지진, 대설이 오기 전에 꼭 가입해야 할 #풍수해보험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상/담/센/터

3 02-2100-5103 | **3** 1588-0100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소상공인

비, 눈, 바람 그리고 지진까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도 이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보험입니다

주택

1 가입대상

온

온실

소상공인

2 정부지원

보험료 70%~92% 지원

3 납입방법

일시납, 2회납, 4회납

✓ 보상하는 손해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 · 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홍수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 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장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목품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일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해일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cm이상 예상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066호(2023.05.10~2024.05.08)



수해보험 상품안내

♥ 상품안내

구분			내용					
가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주택, 세입자동산					
가입목적물			상가, 공장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상가 공장	건물	합산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71		시설, 집기비품	* 임차인은 시설만 가입					
가 입		건물	합산 1천만 이상 1.5억원 이하					
입금		기계	* 임차인은 기계만 가입					
액		재고자산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야오	간판 보장 특약	5백만원 한도					
보상형태		상형태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해당지역			전국 모든 지자체 판매 시행('19.11월 이후)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평균 매출액

식료품 제조업/음료 제조업/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가구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광업/담배 제조업/석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은 제외)/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그 밖의 제품 제조업/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금융 및 보험업

평균 매출액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평균 매출악 30억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부동산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❷ 실제보상사례

'태풍 힌남노'에 의한 강풍 피해 부산 서구 132m² 건물 및 재고자산 가입자 부담 97,700원 493,700원





* 사례 출처: 2023년 풍수해 실무편람(2023년,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및 보험금 지급액





② 2023년에 달라진 풍수해보험

♥보험요율 변경

	구분	평균 변경 요율
TJOU+J	주택 (단독 80m²기준)	-12.4% ♣
정액형	온실 (1,000m²기준)	5.4% 👚
11 A ±1	주택 (단독 80m²기준)	-25.4% ₹
실손형	소상공인 (상가)	

♥ 가입금액 상향

주택 세입자동산 가입금액 및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 상향

면적	보험가입: (단독:	금액 산출기준 주택 기준)	침수피해 보험금 기준				
	변경 전	변경후	변경 전	변경후			
50m ² 이하	1세대 기준가액(500만) × 90%	1세대 기준가액(500만) × <mark>150%</mark>	400만원	600만원			
50m ² 초과	면적당 기준가액(10만) ×주택면적×90%	면적당 기준가액(10만) ×주택면적×150%	175만원 + (4.5만원×주택면적)	262.5만원 + (6.75만원×주택면적)			

♥ 가입대상 확다



지붕부분만 피복재가 있고 양 측면은 피복재가 없는 포도 재배시설로서

2.4m-15% ≦ 비가림 폭 ≦ 2.4m+ 25% 동고: 3m ± 5% 규격에 부합되어야함

필수안내사항



- 1.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을 기초하여 인터넷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간단히 요약한 내용으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무료 "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 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1일관계 학급 보고관리 단계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단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국반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DB순해보험) - 전화 : 1588-0100 / 인터넷 : www.idongbu.com

①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세탁시도 포함증권을 얻는 필포구나 10월 세탁을 정확한 필루터 30월(H번, 반03세 이정의 세탁시가 선확을 통해 세월한 세탁은 45월) 이내에 성악을 철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제절한 계약은 철희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희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풍수해보험은 일반보험으로 보험기간 1년을 기본으로 하며,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예) 주택 보헌기가 1년(365일) 4월1일 가입기준 일시난 보헌료 10만원인 경우

W 1 W 0 12 12 12 13 12 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경과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해지기준일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3.1
	체이하고그	90.000	70.000	60,000	40.000	20.000	0	0	0	0	0	0

※ 보험기간이 7, 8, 9월이 포함될 경우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 적용 시 각월마다 10%씩 가산됩니다. 그러나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예) 주택,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 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해지기준일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3.1
해약환급금	91,781	83,288	75,068	66,575	58,082	49,863	41,370	33,151	24,658	16,164	8,493

※ 상기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을 맿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주요 면책사항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보험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④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⑤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⑥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본사 상담전화: 1588-01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043-880-5500 / 국번없이 1372,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D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